

중재협정을 통한 상사분쟁의 해결촉진*

Settlement Promotion of Commercial Disputes through the Arbitration Agreement

김 상 호**

Sang-Ho Kim

〈목 차〉

- I. 서론
- II. 상사중재협정과 중재지 결정의 편의성 제고
- III. 업무협정을 통한 중재협력의 촉진
- IV. 환황해경제권 부상과 중재협정 체결의 과제
- V. 결어

주제어 : 상사중재협정, 업무협정, 중재지, 분쟁해결의 촉진, 환황해경제권

* 이 논문은 한국중재학회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UAB)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스페인 경제협력 정책세미나 및 학술대회”(2010.7.12-13,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발표한 것으로 논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 하였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부역학과 교수

I. 서론

오늘날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상사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 이를 위해 계약서에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을 기재하고 있다. 중재절차 진행의 전제조건이 되는 중재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등 중재합의의 기본적 요소가 명시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중재기관이 국제상거래계약에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은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국제상거래에서 외국의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우리나라 당사자의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거래당사자가 분쟁해결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중재조항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재실무상 중재조항의 요소 중 당사자가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은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에 관한 합의이다. 중재지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제출, 심리예의 출석, 비용 등의 측면에서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 선호하는 중재지를 고집하다 보면 본계약 자체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중재지를 사전에 확정하여 두는 대신에 당사자 소재국의 중재기관 간에 체결되어 있는 상사중재협정의 중재조항을 이용하는 것이 피차 편리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중재지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양당사자 소재국의 중재기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지를 결정하는 장치를 상호 합의하여 마련해 놓은 것이 협정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유일의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은 현재 24개국의 중재기관과 상사중재협정을 체결하고 있다.¹⁾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상사중재협정과 별도로 외국의 주요 중재기관과 중재제도의 발전과 분쟁해결의 촉진을 목적으로 업무협정도 병행하여 체결하여 왔는데 현재 22개국의 25개 중재기관과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있다.²⁾ 상사중재협정이 중재지 결정의 편의를 위해 체결되는데 반하여 업무협정은 중재심리를 위한 시설(심문장소 등)을 제공하거나 속기나 통역 등 중재절차 진행에 있어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업무협정에서는 분쟁 당사자 소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중재절차 진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UN에서 제정한 UNCITRAL 중재규칙의 이용도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외에 국제상사중재의 발전에 상호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중재관련 정보, 자료를 교환하는 외에 관련 국

1) 1973년 일본의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와 상사중재협정을 체결한 이래 미국(1974), 대만(1978), 네덜란드(1978), 태국(1978), 인도(1979), 가나(1979), 인도네시아(1982), 덴마크(1982), 헝가리(1990), 루마니아(1991), 불가리아(1991), 이탈리아(1992), 폴란드(1992), 중국(1992), 호주(1993), 멕시코(1993), 베트남(1993), 러시아(1994), 싱가포르(1995), 우크라이나(1997), 몽골(1997), 체코(2002) 및 베네수엘라(2003)의 각 중재기관과 체결하였다(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검색, 2010. 6. 10).

2) 1978년 프랑스에 소재하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과 업무협정을 체결한 이래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이 중 1국 2개의 중재기관과 체결한 국가로는 중국, 홍콩, 스페인 3국이다. 중국은 청도중재위원회(2006)와 대련중재위원회(2008)이며 홍콩은 홍콩중재인협회(1999)와 홍콩국제중재센터(2006)이다. 또한 스페인의 경우는 스페인중재법원(1996)과 바르셀로나중재원(1998)이다(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검색, 2010. 6. 10).

제세미나도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재기관 간에 체결되는 중재협정(광의)은 협의의 상사중재협정과 업무협정으로 그 유형이 나누어진다. 상사중재협정은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가 그들의 계약서에 중재조항에 준해서 이용하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따라서 중재기관 간에 상사중재협정이 체결되어 있다고 해서 이 협정이 당연히 양국의 거래당사자를 당연히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재협정에서 권고하는 중재조항을 자신들의 계약서에 합의하여 기재하여야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는 것이다. 상사중재협정과 달리 업무협정의 주된 이용 당사자는 업무협정을 체결하는 중재기관 자신들이다. 중재기관 상호간의 분쟁해결 촉진과 중재제도의 발전을 위한 중재관련 협력이 업무협정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간 대한상사중재원이 체결한 상사중재협정과 업무협정의 내용을 기능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업무협정의 발전적 차원에서 앞으로 환황해경제권역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역내 국가인 남북한 및 중국의 중재기관이 어떻게 협력하여 분쟁해결을 촉진할 것인지의 과제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와 직접 관련된 선행연구에 관하여는 필자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필자는 2003년과 2004년에 본 연구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였다.³⁾ 2003년의 논문에서는 중재기관 간의 중재협정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중재협정의 내용을 기능별로 재분류하는 한편 각 체결국가와 체결연도를 명시하였다. 또한 주된 연구대상을 환황해경제권과 관련시켜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2004년의 논문은 지역경제협력과 사적분쟁의 해결에 관한 연구로서 중국과 일본과의 중재협정에 한하여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모든 체결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된 연구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II. 상사중재협정과 중재지 결정의 편의성 제고

국제중재에 있어서 분쟁당사자의 주된 관심을 중재지이다. 당사자는 그들의 분쟁사건이 자신들의 국가에서 진행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국주의를 고집하다 보면 상대방 당사자와의 합의가 지연되거나 결렬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완화시키고 중재지 결정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사자가 소속하고 있는 양국의 중재기관이 중재지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이를 중재협정의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상사중재협정은 이

3) 김상호, "중재협정과 상사분쟁의 해결촉진", 「국제무역연구」 제9권 제1호, 국제무역학회, 2003.4. 및 김상호, "한국의 지역경제협력과 사적분쟁의 해결" 「국제경영논집」 제19집, 부산외대 국제통상연구소, 2004.2.

미 전술한 바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체결한 상사중재협정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중재지를 결정하는 방식은 ‘한-일 중재협정 방식’과 ‘한-미 중재협정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1. 한-일 상사중재협정

(1) 개요

한-일 상사중재협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이 1973년 10월 26일 일본의 국제상사중재협회와 체결한 협정의 명칭으로 중재원이 체결한 많은 중재협정 중 최초의 협정이다.

무역거래를 위시하여 국제상거래에서는 당사자 간에 상거래계약에 따른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들 갈등이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 국가 중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2국의 중재기관이 상호 밀접하게 협력하여 중재지가 A국이든 또는 B국이든 간에 어느 나라에서나 중재절차 진행에서 당사자가 동등한 조건 아래 그들의 분쟁사건을 중재에 부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중재절차의 이용 및 분쟁해결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국의 중재기관 간에 중재조항의 성격을 가지는 공동약관 방식에 의한 상사중재협정이 체결되는데 한-일 중재협정이 대표적이다.

(2) 협정에서 권고하는 중재조항⁴⁾

한-일 상사중재협정은 이른바 공동조항(joint clause)이라고 호칭되는 방식에 의한 것이다. 그 특징은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의 중재기관에서 상호 대등한 조건으로 중재를 행할 장소 및 중재규칙이 미리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재절차의 실효성이 자동적으로 확보된

4) 한-일 상사중재협정에서 권고하는 중재조항 :

“All disputes that may arise under or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a)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¹⁾ if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in the Republic of Korea or (b)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if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in Japan.

If the place of arbitration is not so designated by the parties or is not agreed by them within 28 days from the date on which a demand for arbitration is received by either of the Associations from either party,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s). Provided that both Associations may agree, on the application of either party to either of the Associations, that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the country of the Claimant(s), such agreement between the Associations being binding upon both parties. Failing such agreement between the Associations within 28 days from the date of the said application,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s).”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a) 중재가 한국에서 행하여지게 되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또는 (b) 중재가 일본에서 행하여지게 되는 경우에는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에 의거하여 중재에 부탁할 것으로 한다. 중재지가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한일 양국의 어느 중재기관이 당사자로부터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당사자가 중재지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지는 피신청인의 나라로 한다. 그러나, 양 기관은 당사자 중의 어느 일방으로부터 양 기관 중 어느 쪽인가에 대하여 신청이 있으면, 중재지를 신청인의 나라로 할 것을 합의할 수 있으며, 양 기관간의 그러한 합의는 당사자를 구속한다. 위의 신청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양 기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재지는 피신청인의 나라로 한다.]

다는 점에 있다.

이 협정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는 한-일간의 상거래에 종사하는 거래당사자에게 협정상의 중재조항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협정에서는 당사자 간에 중재지에 관하여 합의가 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당사자가 중재지에 합의한 경우이다.

당사자가 중재지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중재지가 속한 국가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가 행하여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거래당사자가 중재지를 한국으로 합의하였다면 우리나라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가 행해진다. 반면, 양국의 당사자가 중재지를 일본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는 일본에서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의 중재규칙에 따라 행해진다. 따라서 당사자가 중재지를 한국이나 일본으로 합의한 경우는 아무런 문제없이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둘째, 당사자가 중재지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이다.

중재지가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한-일 양국의 어느 중재기관이 당사자로부터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당사자가 중재지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지는 피신청인의 나라로 한다. 그러나, 양국의 중재기관은 당사자 중의 어느 일방으로부터 양 기관 중 어느 쪽인가에 대하여 신청이 있으면, 중재지를 신청인의 나라로 할 것을 합의할 수 있으며, 양 기관간의 그러한 합의는 당사자를 구속한다. 위의 신청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양 기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재지는 피신청인의 나라로 한다.

한-일 협정에서 이용을 권고하고 있는 중재조항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상거래계약의 당사자가 자신들의 계약서에 동 중재조항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일본과 거래하는 한국 측 당사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⁵⁾이나 한-일 협정에서 권고하는 중재조항 중 어느 하나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택일하여 계약서에 삽입·원용한다면 중재계약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셋째, 중재신청을 접수한 경우 중재기관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한국과 일본의 양국 중재기관 중의 어느 일방이, 이 협정 제1조에 규정된 중재조항을 포함한 계약의 일방당사자로부터 동 중재조항에 따른 중재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상대방 당사자 및 상대방 중재기관에 그 신청서의 사본을 즉시 송부하고 그 사실을 중재를 신

5)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표준적 중재조항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당사자가 국제상거래계약 체결시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표준조항을 이용하면 중재지는 한국으로 되고 준거법, 중재기관 등에서도 한국측 당사자에게 유리하다.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계약에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은 다음과 같다.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청한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⁶⁾.

한·일 협정에서는 또한 이 경우 양국의 중재기관이 중재가 신청인의 나라에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는 위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자신들의 판단에 도달하는데 있어서 관계있는 모든 사정들, 예컨대 부패성 물품이 관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나라가 그 물품의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편리한가를 고려에 넣어야한다⁷⁾.

(3) 평가

중재지를 결정함에 있어 한·일 상사중재협정은 기본적으로 피신청인주의(피고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간에 중재지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의 피신청인이 소재하는 국가의 중재기관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체결한 협정 중 일본, 대만, 태국, 인도, 가나, 인도네시아, 덴마크 및 1990년대에 들어와서 체결한 중국, 러시아 및 동구 사회주의 권 국가 등 북방교역 대상국가의 중재기관과 체결한 협정들이 이에 속한다.⁸⁾

피신청인주의에 입각해서 중재지가 결정되어 절차가 진행될 경우의 장점으로는 분쟁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제반 물적 자료가 있기 때문에 증거제출 및 판정의 집행 등에 있어서 편리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피신청인이 분쟁을 야기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피신청인주의가 채택되면 상당한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되기 이전에는 소송 제기나 중재신청 등의 남발을 억제케 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는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국가에서 자신들의 사건이 처리되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주의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특히 국제간의 상거래에서 물품의 이전이 행해지고 난 후에 품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주의는 비합리적이다. 예컨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된 물품을 검사한 결과 현저한 품질불량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면 피신청인주의에서는 매도인의 소재지에서 중재가 진행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분쟁물품은 원고에 해당하는 중재신청인 소재국가에 있으므로 중재인이나 검사인으로 하여금 분쟁물품에 대한 불량확인이나 검사에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분쟁물품이 변질되기 쉬운 부

6) 한·일 상사중재협정 제2조 제1항.

7) 한·일 상사중재협정 제2조 제2항.

8) 상설중재기관으로서 피신청인주의에 입각하여 중재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기관은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가 아닌가 한다. 동 협회는 이미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걸쳐 동구 공산권 국가의 중재기관들과 일련의 중재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전형적인 피신청인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동구권의 헝가리,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의 각 중재기관과 체결한 협정의 내용과 거의 같다.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가 이들 국가의 중재기관과 협정을 체결한 시기를 보면 1957년에는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와 체결하였고 1961년에는 불가리아 및 헝가리의 중재기관과 각각 체결하였다.

패성 물품(perishable goods)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피신청인주의에 입각하면서도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양국의 중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중재지를 신청인 국가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한 한-일 협정이 보다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된다⁹⁾.

3. 한-미 상사중재협정

(1) 개요

한-미 상사중재협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외국의 주요 중재기관과 두 번째로 체결한 것으로 1974년 11월 19일 세계 최대의 중재기관인 미국의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와 체결한 협정이다.

한-미 협정도 그 근본취지는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의 거래 당사자들이 상호간에 상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중재조항, 특히 당사자 간에 중재지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함으로 인해 본계약 자체의 체결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중재지 결정의 매커니즘은 한-일 협정의 방식과는 다르다.

(2) 협정내용 분석

1) 권고하는 중재조항

한-미 상사중재협정에서 권고하는 중재조항의 내용은 한-일 협정의 그것보다 다소 문구가 길고 복잡하다. 따라서 이를 간소화하여 표준중재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 표준 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계약도 한-미 상사중재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중재조항의 모든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한-미 상사중재협정에서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 :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pursuant to the U.S.-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of December 1, 1974, by which each party hereto is bound.”(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의견 차이는 1974년 12월 1일자 한-미 상사중재협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며 당사자들은 이에 구속을 받는다.)

9) 대한상사중재원이 중국, 러시아 등 과거 북방교역 대상국가의 중재기관과 체결한 중재협정에서는,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으면 중재지가 자동적으로 피신청인국가로 되도록 하였다.

2) 분석

위 표준중재조항에 언급된 협정의 구체적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기관과 중재규칙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중재협정에서는 중재가 한국에서 행하여지게 되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거하여 행하며, 중재가 미국에서 행하여지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중재협회의 규칙에 의거하여 행하는 것으로 하였다¹⁰⁾.

둘째, 합동중재위원회(Joint Arbitration Committee)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다¹¹⁾.

중재가 행하여질 장소가 계약서에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그러한 장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자기가 거주하는 국가의 중재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중재기관은 양당사자에 대하여 중재장소에 관한 그들의 쟁점 및 선호이유를 3인의 합동중재위원회에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합동중재위원회의 3인의 위원 중 2인은 대한상사중재원과 미국중재협회에서 각각 선정하며, 이 2인의 위원에 의하여 의장으로 행동할 제3의 위원이 선정된다. 제3의 위원은 양 기관 중 어느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양 위원회의 소재지는 서울과 뉴욕으로 하며 합동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지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분쟁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3) 평가

한·미 중재협정에서는 중재지 결정을 별도의 중재지 결정기구인 합동중재위원회에 위임하는 형태의 협정이다. 분쟁당사자 간에 중재지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반면 그렇다고 거래관계가 전혀 없는 제3국에서 중재를 진행하는 것도 증거제출, 중재비용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모두에게 수락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협정상에 중재지 만을 결정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¹²⁾ 분쟁발생 후 당사자 간에 중재지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 동 기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이 네덜란드중재협회와 체결한 협정이 이에 속한다.

10) 한·미 상사중재협정 제1조.

11) 한·미 상사중재협정 제2조.

12) 한·미 상사중재협정의 합동중재위원회(Joint Arbitration Committee)가 이에 해당한다.

Ⅲ. 업무협정을 통한 중재협력의 촉진

1. 개요

상사중재협정이 중재지의 결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중재조항의 성격을 가지는데 반해 업무협정은 중재기관 상호간의 분쟁해결 촉진과 중재제도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중재협력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상사중재의 실무에서 불 때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의 지위에 있는 중재인의 공정성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상설중재기관은 중재판정부 구성을 위해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인명부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중재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정을 통해 중재판정부 구성에 상호 협조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촉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A국의 중재기관에 등록된 중재사건의 중재지가 B국으로 되어있는 경우 B국의 중재기관이 해당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단독중재인이성할의장중재인을 추천하는 경우이다. 이와 함께 B국의 중재기관은 동 중재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심리를 개최할중재인을 제공 구성할속기성할통역 등 중재절차 진행상의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수 있제상거래가 복잡·대규모화되고 세계화가 촉진되면서 그에 비례하여 분쟁해결의 있제적 협력이 긴요하게 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의장중필요성에 대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이 체결한 대표적인 것으로 한-ICC 업무협정과 한-오스트리아 업무협정이 있다.

2. 한-ICC 업무협정

이 협정은 중재시설제공 및 중재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이 ICC(국제상업회의소)측과 1978년에 체결하였다. 한-ICC협정의 당사자는 4개 기관이다. 즉,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 Court of Arbitration) 및 국제상업회의소 한국 국내위원회(ICC Korean National Committee)이다. 이 중 협정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자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이다.

한-ICC 업무협정의 특징은 중재관련 정보나 자료교환의 차원을 넘어,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세미나와 회의를 공동으로 조직하여 개최하며 ICC 중재사건의 진행에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이 ICC 중재법원의 중재업무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로서, ① ICC 중재법원의 요청에 따라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을 추천하며¹³⁾, ② 중재지가 서울로 된 경우 중재심

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실에서 진행되며 대한상사중재원은 ICC 중재인에게 그 자신의 중재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중재관리상의 지원(속기, 통역 등)을 하도록 하였다¹⁴⁾.

한-ICC 협정과 유사한 형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아·아법률자문위원회(AALCC)¹⁵⁾ 산하의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및 카이로 지역중재센터와 체결한 업무협정에서도 발견된다. 이들 협정에서는 중재판정의 집행, 특히 동 지역중재센터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주관하에 중재절차가 진행되어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의 중재판정집행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3. 한-오스트리아 업무협정

(1) 협정의 주요내용

이 협정의 당사자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오스트리아 연방상의(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및 동 연방상의 국제중재센터(International Arbitral Centre)이다. 협정의 당사자들은 협상(negotiation), 알선(mediation), 조정(conciliation), 사실조사(fact-finding), 간이심리(mini-trial), 중재(arbitration) 기타 적절한 절차에 의해 혹은 이들 분쟁해결 수단의 결합에 의해 오스트리아에서는 물론 다른 제3의 국가에서도 무역이나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협정의 특징은 여타의 협정과는 달리 협정체결 양국의 거래 당사자만이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당사자와 거래하는 다른 제3국의 거래당사자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오스트리아와 한국 내에 국제상사중재를 위한 센터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협정체결의 당사자들은, 분쟁해결에 대처하기 위해 ① 알선인(mediators), 조정인(conciliators), 중재인(arbitrators)의 명부(panels)를 각각 유지·관리하며 ②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적 서비스, 증거기록, 번역, 문서의 보관 등을 포함한다. ③ 또한 협정의 당사자인 중재기관이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 선정기관(appointing authority)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도 합의함으로써 한국 기업이 관련된 분쟁사건의 제3국 중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13) 한·ICC 업무협정 제5조.

14) 한·ICC 업무협정 제6조.

15) AALCC는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의 영문명칭인 The 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Committee의 약칭이다.

(2) 타 협정과 비교 및 전망

오스트리아는 중립국으로서 국제연합의 기관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동서국가 간의 중재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중재협회는 1984년 「미-헝가리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을, 1985년에 「미-불가리아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을, 1988년에 「미-폴란드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을, 그리고 1989년에는 「미-체코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을 각각 해당 국가의 중재기관과 중재협정 형식으로 체결한 바 있다.

이상 4개의 협정 모두 미국중재협회와 해당국가의 중재기관¹⁶⁾ 및 중재인 선정기관인 오스트리아 연방상의 간의 3자 협정(tripartite agreement)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의 협정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중재지로 고정시켜 놓은 반면¹⁷⁾ 폴란드 및 체코와의 협정에서는 중재지를 원칙적으로 비엔나로 하되 당사자 합의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협정에서는 공히 UNCITRAL 중재규칙을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절차적 준거규칙으로 하도록 하였다.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의 협정은 1984-1985년에 체결된 반면 폴란드 및 체코와의 협정이 1988-1989년에 체결된 것임을 고려할 때 중재지를 특정지역으로 정해놓는 것으로 하면서도 당사자 합의로 다른 장소로 변경이 가능하게끔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폴란드 및 체코와의 협정에서는 분쟁물품의 소재지, 물품검사 기타 증거제출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비엔나 이외의 지역에서도 중재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오스트리아 업무협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선정기관으로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즉, 중재원이 한-오스트리아 협정에 따라 단독 및 의장 중재인을 선정해 주도록 요청을 받으면 중재원은 UNCITRAL 중재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할 것이다.¹⁸⁾

중재원은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 중재인 명부(Panel of Arbitrators)를 이용할 것이다. 동 명부에는 법조계, 실업계, 학계, 공공단체, 외국인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들이 올려져있다. 따라서 중재원이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을 선정할 때에는 분쟁사건의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사건에 적합한 전문적 식견과 거래경험 및 어학력을 갖춘 자를 중재인 후보자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단독 및 의장 중재인을 선정할 때 중재원은 당사자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당사자의 어느 편에도

16) 헝가리에는 헝가리상업회의소(Hungarian Chamber of Commerce), 불가리아에는 불가리아상공회의소(Bul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폴란드에는 폴란드대외무역회의소(Polish Chamber of Foreign Trade) 그리고 체코에는 체코상공회의소(Czechoslovak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가 중재기관으로서의 협정체결의 당사자이다.

17) 「미-소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에서도 스웨덴의 스톡홀름을 중재지로 고정시켜 놓고 있다.

18) UNCITRAL 중재규칙 제6조-제7조.

속하지 아니하는 제3국인 중에서 선정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UNCITRAL 중재규칙에서는 3인의 중재인이 선정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만약 어느 당사자가 자기 측 중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면 타방당사자는 선정기관에게 동 당사자를 대신하여 중재인을 임명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인선정기관은 중재인 선정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원은 중재인명부에서 중재인을 선정할 수도 있고 명부 외에서 적격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IV. 환황해경제권 부상과 중재협정 체결의 과제

1. 문제의 제기

환황해경제권은 중국의 환황해지역(랴오닝성, 허베이성, 산둥성, 장쑤성, 베이징시, 텐진시 및 상하이시)과 한국의 환황해지역(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및 부산시), 그리고 일본의 규슈까지를 포함하는 지역적 범주를 말한다.

환황해권과 연계시켜 중국은 동부연안으로 눈을 돌려 대규모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있다. 다롄에서 시작해 텐진-칭다오-상하이-닝보-샤먼-푸저우-선전-광저우 등으로 연결되는 포트벨트(port belt)는 중국의 동북아 및 환황해경제권 중심의 포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¹⁹⁾

우리나라도 환황해경제권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2008년 4월 25일 정부(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충남의 송악, 인주, 지곡과 경기도의 포승, 향남 등 5개 지구에 대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지정 지역은 충남의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일원과 경기도의 평택시, 화성시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총면적은 총 5,505.1만m²에 달하고 2025년까지 7조4천억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환황해경제권의 한 축을 형성하는 인천은 개성공단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남북 물류 및 상사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진다고 하겠다. 개성공단은 물류 흐름에 있어 한반도 중앙회랑(평양-개성-서울)과 서부회랑(평양-개성-인천)의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은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을 경우 원자재 수급 및 생산물자의 판로에 영향을 미쳐 공단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의 수출입 물동량을 서부회랑

19)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서해안지각변동 1-3”, 『G-Economy』(2008년 1월호), pp.15-17 참조.

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중앙회관을 경유하여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 핵문제의 해결, 개성공단 개발의 본격화와 함께 북미, 북일 간에 정식으로 수교가 되면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하여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이 활성화되어 환황해경제권을 중심으로 경제교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지역의 분쟁해결 촉진을 위해 남북한 및 중국 3국의 중재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협력의 연결고리는 3국의 중재기관이 체결하는 중재협정이란 점에서 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

협정체결의 주요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의 중재기관 및 중국의 중재기관이 될 것이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분쟁당사자 간에 가장 민감한 사항인 중재지 결정문제, 중재절차를 적용할 중재규칙 문제,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환황해경제권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역내의 중재기관이 공동으로 해결하는 문제들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2. 협정체결시의 주요 현안

(1) 중재지 결정

첫째, 피신청인 국가를 중재지로 하는 방식으로 이미 한-일 중재협정에서 고찰한 바 있다. 둘째, 국제적 중재규칙에 따라 자국에서 진행되는 방식이다.

예컨대 남북한 간에 체결된 합의서²⁰⁾에 따라 창설된 남측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중재지를 '서울'로 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하지만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제정한 남북중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규칙이나 미국중재협회(AAA)의 중재규칙을 적용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된다면 개성공단을 포함하여 남북한 간에 발생하는 대형 분쟁사건(남북한 및 중국의 3국 당사자 관련되는 사건 포함)의 경우 분쟁 당사자에게 상당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홍콩국제중재센터는 국제중재사건의 홍콩 유치에 위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홍콩국제중재센터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지만 적용 중재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 런던국제중재법원 및 미국중재협회의 각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²¹⁾

20) 2000년 12월에 체결된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및 2003년 8월에 체결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말한다.

21) ICC 규칙에 따라 중재가 진행되는 경우의 중재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in Hong Kong at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이 계약으로부터 I혹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규칙에 따라서, 또한 동 규칙에 따라 선정된 1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중재지는 홍콩의 홍콩국제중재센터로 한다).

셋째, 제3국 중재진행 방식이다.

앞으로 남북한 간의 중재협력이 강화되는 경우 및 환황해경제권 내의 경제교류가 촉진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역내 분쟁의 제3국 중재를 촉진시키는 중재협정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이 체결한 ‘한·오스트리아 중재협정’ 방식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적용 중재규칙

남북한 및 중국은 모두 UN의 회원국이다. 따라서 UN 차원에서 제정한 UNCITRAL 중재규칙을 환황해경제권 내의 분쟁해결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NCITRAL 중재규칙을 이용한다는 것은 UNCITRAL의 정신인 중재제도의 범세계적 통일화와 조화를 지향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활성화와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²²⁾

국제간의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해 UNCITRAL 중재규칙이 최초로 언급된 중재협정은 “미·소 무역계약에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중재조항”(Optional Arbitration Clause for Use in Contracts in USA-USSR Trade)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7년에 체결된 이 협정의 체결 당사자는 미국중재협회와 소련연방상공회의소이다. 또한 1984년 미국중재협회와 헝가리상공회의소 간에 체결된 같은 명칭의 중재협정에서도 중재절차에 관하여 UNCITRAL 중재규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와 소련 간에 체결된 후러시아로 승계된 한·러 투자보장협정에서도 일방 계약당사국과 타방 계약당사국 투자자 간의 분쟁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UNCITRAL 중재규칙은 보편적인 국제적 중재규칙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UNCITRAL 중재규칙은 초안 작업시 뉴욕협약, 워싱턴협약, 모스크바협약과 같은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을 고려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중재규칙인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규칙, 미국중재협회 중재규칙, 소련상공회의소 중재규칙도 고려하였다.²³⁾

(3) NAFTA식 분쟁해결 방식의 도입

1) CAMCA 탄생의 배경

이는 환황해경제권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창설된 다국적 성격의 중재기관인 CAMCA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다.

22) UNCITRAL 중재규칙은 1976년 4월 28일 UNCITRAL 제9차 회기에서 채택된 41개조로 구성된 중재규칙이다. 동 규칙은 범세계적 이용을 위해 제정되었는데 원래 임시적 중재(ad hoc arbitration)를 지향하고 있었으나 제도적 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를 배타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 주요 국제중재기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23) Piter Sanders, "Commentary on UNCITRAL Arbitration Rules," ICCA Yearbook Vol.2, No.1, Deventer :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77, pp.173-174.

CAMCA(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 : 아메리카 상사중재·조정센터)는 NAFTA에 의거하여 창설된 사적 분쟁해결기구이다. 이 기구는 NAFTA 역내에서 발생하는 사적 상사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NAFTA 회원국인 캐나다·미국·멕시코 3국의 대표적 중재기관의 공동노력이 결실을 맺어 1995년 12월에 창설되었다. NAFTA는 역내 국가간의 상사거래(무역,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는 NAFTA 제2022조이다.

CAMCA 창설을 주도한 주역은 역내 회원국을 대표하는 중재기관이다. 즉 미국의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미국중재협회),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브리티시 컬럼비아 국제상사중재센터) 및 Quebec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퀘벡상사중재센터), 멕시코의 Mexico City National Chamber of Commerce(멕시코시상업회의소)의 4개 중재기관이다.

CAMCA는 NAFTA 역내의 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창설된 다국적 성격을 가진 상설 기관으로 통일된 규칙과 정책 및 행정절차를 가지고 운영된다. 역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은 CAMCA 창설을 주도한 상기 중재기관의 어느 사무소에서도 접수될 수 있다.

CAMCA식 분쟁해결 방식을 환황해경제권역의 분쟁해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남한, 북한 및 중국의 중재기관이 중재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즉, 남한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3기관이 CAMCA 모델인 다국적 중재기관을 창설해야 한다. 그리고 분쟁사건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남북한 및 중국의 어느 중재기관에도 제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3국의 중재기관이 공동으로 제정한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방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재판정의 국제적 승인과 집행을 위해 UN이 제정한 뉴욕협약에 북한이 조속히 가입해야 한다.

2) CAMCA가 권고하는 조정 및 중재조항

당사자는 장래분쟁의 해결을 담보하기 위해 CAMCA가 권고하는 조정조항과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다. 만약 계약서에 이들 조항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당사자는 동 현존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CAMCA가 권고하는 부탁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조정이나 중재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CAMCA에서는 장래분쟁은 물론 현존분쟁의 해결을 위해 조정조항·중재조항·조정부탁합의서·중재부탁합의서 등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쟁해결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들 조항 중 조정과 중재조항이 연계된 분쟁해결조항이 많이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²⁴⁾

중재조항에 추가가 가능한 사항으로는, ① 중재인의 수(1인 혹은 3인) ② 중재지(도시/국가) ③ 분쟁사건에 적용될 실체법(준거법) ④ 언어 등이다.

3) CAMCA가 주는 시사점

1993년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주관으로 「한·중·일 국제중재심포지움」이 개최된 바 있다.²⁵⁾ 당시의 동북아 상황은 한·중 양국 수교(1992. 8) 이후 1년여가 지났고 양국 간의 경제교류가 증대되는 한편으로 동북아 역내에서 발생하는 사적 분쟁해결의 중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한·중·일 3국의 ADR관련 전문가들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중국측 발표자로 참석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唐厚志 부주석은 “중국의 국제상사중재 및 조정제도”를, 일본의 松浦 聲 교수(Meijo University)는 “한국·중국·일본의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상위점 및 공동분쟁해결방법”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특히 松浦 聲 교수는 동 논문에서, 앞으로 국제상사중재는 기관중재로 발전해 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중·일 3국의 상설중재기관이 협동하여 역내의 사적 분쟁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²⁶⁾

앞으로 환황해경제권의 경제교류의 활성화 및 한·중·일 3국 간의 FTA체결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이제는 이미 십수년 전에 제기된 한·중·일 중재기관(북한 포함)이 협력해서 역내 분쟁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환황해경제권역 내지 동북아 역내에 공동분쟁해결기구의 설립을 검토함에 있어 NAFTA의 CAMCA식 해결방식이 시사해 주는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²⁷⁾

24) 조정과 중재가 연계된 분쟁해결조항 : The parties agree that they will endeavor to settle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which they are unable to settle through direct discussions, by mediation administered by the 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 under its rules before resorting to arbitration. Thereafter,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administered by the 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and judgment on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may be entered in any court having jurisdiction thereof. The requirement of filing a notice of claim with respect to the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submitted to mediation shall be suspended until the conclusion of the mediation process.

25) 1993년 11월 24일 대한상사중재원 주최 심포지움자료(한·중·일 국제중재심포지움Ⅱ) 참조.

26) 관련 부분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더욱 필요한 것은 한국·중국·일본의 상설중재기관이 상호 연대·교류를 밀접하게 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래 한국, 중국, 일본간의 국제거래분쟁은 원칙적으로 모두 3국의 어느 상설중재기관의 중재로 처리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3국의 중재기관이 기존의 분쟁을 각각 자기의 중재사건으로 하는데 애설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3국의 중재기관이 공동으로 국제거래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국제중재 제도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해서, 각각 그와 같은 시각에서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요긴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재사건 수는 현재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중재협정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항상 중재업무상의 긴밀한 연락이나 의사소통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될 수 있는 한, 무용한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규를 정비함과 동시에, 특히 외국당사자를 배려한 실무가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주24)의 자료 중 「한·중·일 국제중재심포지움(Ⅰ)」, pp.33-34]

27) 김상호, “동북아 역내의 사적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기구 설립방안”, 「중·한·일 국제중재학술대회」(2003.8.18, 중국 북경), 한국중재학회·대한상사중재원·북경중재위원회 공동개최, pp.73-83 참조.

V. 결어

중재지 결정이 피신청인주의(피고지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한-일 상사중재협정 방식에서는 한-미 협정 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재지가 빨리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재절차의 신속화를 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협정의 방식에서는 중재지를 결정하는 합동중재위원회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양국의 중재기관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체결한 협정 중 중재기관 상호간의 분쟁해결 촉진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ICC 업무협정’과 ‘한-오스트리아 업무협정’은 협력의 내용이 보다 강화되고 다양화되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분쟁사건의 해결을 위해 ICC 중재법원에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한-ICC 중재협정은 우리나라 당사자에게 제반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협정에서는 ICC에 중재가 신청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중재절차 진행이 우리나라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행정적 및 사무적 지원에 따라 행해질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 구성에 있어서도 대한상사중재원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오스트리아 업무협정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 선정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재원은 한-오스트리아 협정에 따라 제3국에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무역강국으로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분쟁해결의 국제화와 선진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며 우리나라와 EU(유럽연합)와의 FTA체결에 따른 분쟁해결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해소되면 개성공단 개발의 본격화와 함께 환황해경제권역에는 미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하여 남북한과 중국 3국간의 무역, 투자 등 경제교류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다양한 상사분쟁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한의 중재기관과 중국의 중재기관이 협력하여 환황해경제권역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분쟁사건은 중재피신청인 소재지(서울, 평양 혹은 개성 등)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분쟁사건이 남북한에 민감한 사안이거나 대형 분쟁사건인 경우에는 중재지로 남북한이 아닌 중국(베이징, 상하이)이나 홍콩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재절차에 어느 중재규칙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환황해경제권역의 남북한 및 중국의 중재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중재협정 체결을 통해 중재지 결정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UNCITRAL 중재규칙의 이용 가능성을 역내권의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환황해경제권역 내지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FTA체결에 대비하여 역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역내의 중재기관이 협력하여 NAFTA의 CAMCA 방식처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안까지도 염두에 두고 협력하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상호, “동북아 역내의 사적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기구 설립방안”, 「중·한·일 국제중재 학술대회 논문집」(2003.8.18, 중국 북경), 한국중재학회·대한상사중재원·북경중재위원회 공동개최.
- _____, “중재협정과 상사분쟁의 해결촉진”, 「국제무역연구」 제9권 제1호, 국제무역학회, 2003.4.
- _____, “한국의 지역경제협력과 사적분쟁의 해결” 「국제경영논집」 제19집, 부산외대 국제통상연구소, 2004.2.
- 문형근, “NAFTA 상사중재 및 조정기구에 관한 고찰”, 「중재」 제299호 (2001·봄), 대한상사중재원.
- 松浦 聲, “한국·중국·일본의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상위점 및 공동분쟁해결방법”, 「한·중·일국제중재심포지움(I)」(1993. 11. 24, 서울).
- 唐厚志, “중국의 국제상사중재 및 조정제도”, 「한·중·일 국제중재심포지움(II)」 (1993. 11. 24, 서울).
- Piter Sanders, “*Commentary on UNCITRAL Arbitration Rules,*” ICCA Yearbook Vol.2, No.1, Deventer :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77.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서해안지각변동 1-3”, 「G-Economy」(2008년 1월호).
- 〈중재관련 합의서 및 협정자료〉
- 한-일 상사중재협정(1973)
 - 한-미 상사중재협정(1974)
 - 한-ICC 업무협정(1978)
 - 한-AALCC(쿠알라룸푸르 중재센터) 업무협정(1982)
 - 한-AALCC(카이로 중재센터) 업무협정(1989)
 - 한-중 상사중재협정(1992)
 - 한-오스트리아 업무협정(1996)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2000)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2003)

Arbitration Agreements entered into by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with the arbitral institutions in socialist states, including USSR, Hungary, Bulgaria and Poland.

Arbitration Agreements entered into by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with the arbitral institutions in socialist states, including Poland, Czechoslovakia, Rumania, Bulgaria and Hungary.

<http://www.kcab.or.kr>

ABSTRACT

Settlement Promotion of Commercial Disputes through the Arbitration Agreement

Sang-Ho Kim

It is well recognized that the availability of prompt, effective and economical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orderly growth and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ncreasingly, arbitration, instead of litigation in national courts, has become the preferred means of resolving privat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Under the situation, it will be important thing for arbitral institutions to reach an agreement to promote the dispute settlement of the commercial disputes, for which efforts have been made betwee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l Board(KCAB) and principal arbitration institutions of the foreign countries. Since 1973, the KCAB has entered into many arbitration agreements with well-known foreign institutions of arbitration. If the place of arbitration is not so designated by the parties, it, as a general rule, shall be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s) under the Korea-Japanese Arbitration Agreement. On the other hand, the U.S.-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maintains 'Joint Arbitration Committee' which finally decide the place of arbitration. In 1996, the Korea-Austria Agreement of Cooperation was concluded for the prompt and equitable settlement on an amicable basis of commercial disputes. Under this Agreement, arbitral institutions between Korea and Austria agreed to act as an appointing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It is also very important for Korea and China including North Korea to cooperate each other for the settlement of the commercial disputes within the Pan Yellow Sea Economic Bloc(PYSEB). The PYSEB is quickly becoming a distinctive and crucial region in the world sharing geographical proximity, many common historical experiences, and similar cultural norms and values although they have disparities in stages of development, trade and economic policies, and financial and legal frameworks.

Finally, it should be considered to establish a central common system for settlement

promotion of the commercial disputes within the PYSEB through the arbitration agreement. Such a dispute resolution system was already introduced and established within the area of the NAFTA, and it is called the 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CAMCA).

Key Words :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Cooperation Agreement, Place of Arbitration, Promotion of Dispute Settlement, Pan Yellow Sea Economic Bloc